

울산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가단1072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성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2019.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9. 1. 22. 접수 제29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7. B와 사이에, B이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부담할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 것을 비롯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별지1 보증내역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하고, B에게 그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은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B은 이 사건 신용보증 하에 C은행으로부터 2015. 4. 7.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대출내역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들(이하 ‘이 사건 금융기관들’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B이 2019. 7. 8. 신용관리정보 등록으로 인한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2019. 12. 19. C은행에게 합계 43,768,293원을 대위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금융기관들에게 별지3 대위변제 내역 기재와 같이 각 구상금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을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은 각 별지4 내역 기재와 같다.

라. 한편 B은 2019. 1.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배우자이던 피고(2019. 1. 22. B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명의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각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B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2019. 1. 22.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줌으로써(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B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B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를 정당한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것으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B와 2016. 6. 30. 이후 별거하여 그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나는 행위를 말하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8. 6. 21.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040호로 B과 D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② 피고와 B은 2018. 8. 27. 피고가 위자료로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는 즉시 위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2018. 10.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B은 2018. 12. 31.까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E조합,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60,000,000원)를 모두 말소한 상태로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③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9. 10. 위 소송을 취하하였고, B과 함께 2018. 10. 1.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8호협597호로 협의이혼신청을 한 사실, ④ 그런데 B이 위 합의서에 따라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변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 17. B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협의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갑”은 피고를, “을”은 B을 말한다), ⑤ 피고와 B은 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은 다음 2019. 1. 22.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제2조 [내용]

① 을은 재산분할로서 을 명의의 ‘경상남도 양산시 G아파트 H호’를 협의이혼 의사확인일인 2019. 1. 22. 이전까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단,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위 아파트로 담보한 대출금을 2019. 12. 31.까지 전부 변제하고, 위 대출금 변제 이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변제하며, 같은 날까지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근저당권자 E조합,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56,000,000원)를 말소하고, 그 외 위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나 제한을 모두 말소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2019. 1. 22. 이전까지 금130,000,000원(일억삼천만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단, 공증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을이 2019. 12. 31.까지 위 대출금을 전부 변제할 경우 위 공정증서의 효력은 무효로 한다. 공정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을은 갑에게 130,000,000원을 2019. 12. 31.까지 지급하되, 불이행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단, 위 기한까지 불이행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것을 승낙한다.

④ 갑은 을이 위 제1항과 제3항을 이행한 후 을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접수증 및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교부받은 다음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일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 성립에 협조하기로 한다.

⑤ 만일 을이 위 제1항,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갑은 2019. 1. 22. 협의이혼의사확인 일에 출석하지 않고, 갑이 을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확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은 2019. 1. 22. 이혼하였고, 그에 관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B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본다.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참조).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조합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2007. 2. 13.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I일자 J를, K일자 L를 각 출산한 사실, ② B은 2010. 9. 24. 이 사건 아파트를 164,900,000원에 단독 명의로 매수하여 2010. 10. 1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곳에서 피고 및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은 주식회사 M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은 2005. 4.경부터 N를 2014. 4.경부터 주식회사 O을 각 운영하여 왔고, 앞서 본 이 사건 금융기관들의 대출금은 위와 같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B이 대출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 등으로 하여 대출받은 것인 점, ④ B은 D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 가정생활에 소홀히 하여 오다가 2016. 6.경

가출하여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2016. 6. 30.부터 밀양시 P 소재 주택에서 D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와 B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9. 1. 17. 이 사건 재산분할 합의를 하고, 2019. 1. 22. 협의이혼신고를 마침으로써 이혼한 사실, ⑥ 피고는 B과 혼인 이후 전업주부로 지내 왔는데, B과 별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⑦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E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56,000,000원)가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고 있고, 그 피담보채권의 대출원금은 123,500,000원인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72,500,000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취득한 실질적인 재산가액은 49,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172,500,000원 - 대출원금 123,500,000원) 가량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남 양산시
 아파트 동
 [도로명 주소]
 경남 양산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7층 공동주택(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호 84.962㎡

대지권의 표시

토지권의 표시: 경남 양산시 대 27883.4㎡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7883.4분의 52.0717

--- 이 상 ---

별지1

보증내역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 상대처	기업제명
①		85,000,000	2015. 4. 7.	2019. 7. 5.	기업일반 운전자금		
②		96,000,000	2015. 10. 30.	2019. 10. 25.	일반자금 대출(은행)		
③		280,000,000	2016. 3. 30.	2020. 3. 27.	일반자금 대출(은행)		
④		270,000,000	2015. 5. 29.	2019. 7. 3.	중소기업시설 자금대출		
⑤		90,000,000	2015. 5. 29.	2019. 11. 22.	중소기업시설 자금대출		
⑥		270,000,000	2015. 5. 29.	2020. 5. 22.	중소기업 자금대출		
⑦		51,000,000	2015. 5. 29.	2020. 6. 19.	기업일반운전 자금		
⑧		200,000,000	2015. 5. 29.	2019. 11. 29.	일반자금 대출(은행)		
⑨		42,500,000	2015. 10. 30.	2019. 10. 25.	일반자금 대출(은행)		

별지2

대출내역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①		85,000,000		2015. 4. 7.	100,000,000
②		96,000,000		2015. 10. 30.	120,000,000
③		280,000,000		2016. 3. 30.	330,000,000
④		270,000,000		2015. 7. 3.	260,000,000
⑤		90,000,000		2015. 5. 29.	100,000,000
⑥		270,000,000		2015. 5. 29.	300,000,000
⑦		51,000,000		2015. 5. 29.	60,000,000
⑧		200,000,000		2013. 12. 4.	200,000,000
⑨		42,500,000		2015. 10. 30.	50,000,000

별지3

대위변제 내역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 금	이 자	구상금합계
①		2019. 12. 19.	42,500,000	1,268,293	43,768,293
②		2019. 12. 12.	80,000,000	1,830,443	81,830,443
③		2019. 12. 12.	280,500,000	6,004,850	286,504,850
④		2020. 2. 25.	29,250,000	713,459	29,963,459
⑤		2020. 2. 25.	63,000,000	1,776,708	64,776,708
⑥		2020. 2. 25.	270,000,000	7,273,729	277,273,729
⑦		2019. 12. 19.	51,000,000	1,611,347	52,611,347
⑧		2019. 11. 29.	162,000,000	2,994,203	164,994,203
⑨		2019. 11. 29.	34,000,000	670,311	34,670,311
합계			1,012,250,000	24,143,343	1,036,393,343

별지4

〈표5. 대위변제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 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발생금액	회수금액	잔 액	확정지연손해금
①		43,768,293	-	43,768,293	-
②		81,830,443	977,520	80,852,923	214
③		286,504,850	-	286,504,850	-
④		29,963,439	-	29,963,439	-
⑤		64,776,708	-	64,776,708	-
⑥		277,273,729	-	277,273,729	-
⑦		52,611,347	-	52,611,347	-
⑧		164,994,203	-	164,994,203	-
⑨		34,670,311	-	34,670,311	-
합계		1,036,393,323	-	1,035,415,803	214

〈표6. 지연손해금율 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발생금액	대상기간	일수	요율	미수금액
①		42,500,000	2019.07.06.~2019.12.18.	168	1.4	270,660
②		80,000,000	2019.10.26.~2019.12.11.	47	1.5	154,520
③		280,500,000	-	-	-	-
④		29,250,000	2019.07.04.~2020.02.24.	236	2.2	416,070
⑤		63,000,000	2019.11.23.~2020.02.24.	94	2.2	356,940
⑥		270,000,000	-	-	-	-
⑦		51,000,000	-	-	-	-
⑧		162,000,000	-	-	-	-
⑨		34,000,000	2019.10.26.~2019.11.28.	34	2.3	72,840
합계		1,012,250,000				1,271,030

